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15회 임시회 (2017.0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용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09월 14일(木), 김효식 의원 외 9인

3. 위원회 회부일자

○ 2017년 09월 18일(月)

4.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 제20조

○ 「주거기본법」 제20조

5. 제안이유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자율적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함.

6. 주요내용

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나.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안 제6조)

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안 제7조)

라.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 조정 및 예방한 입주자등에 대한 포상(안 제10조)

7.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거기본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입주자 간의 분쟁을 완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총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 하였고.
- 안 제5조는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 안 제6조는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한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권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내용 규정하고,
- 안 제9조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한 공동주택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공동주택에서는 다양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 중에 상당부분 층간소음이 차지하고 있어 이로 인해 여러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정부에서도 「소음·진동관리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제정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 간의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거복지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